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안 제4조)
-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라. 예산 편성·집행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장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동반하여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2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국외여행 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허가권자)”를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으로,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자”로, “의장은 의원,”을 “의장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인 이내로”를 “5인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국과 여행기관”을 “방문국과 방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여행”을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같은 호 중 “여행이어야 하고, 국외여행”을 “출장이어야 하고,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을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으로,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행국”을 “방문국”으로, “여행경위”를 “출장경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여행계획서”를 “출장계획서”로, “개최하며”를 “개최하고 의장이 지명한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취지를 설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최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7조의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을 “(출장계획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여행계획서를”을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여행보고서 제출)”을 “(출장보고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출장을”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목 적						
동기 및 내용						
기 간	. . . ~ . . . (일간)					
방 문 국						
대 상 자	소속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 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 고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방문국·목적·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방 문 국 :
2. 목 적 :
3. 기 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u> <u>공무국외여행 조례</u>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u> <u>공무국외출장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u>공무국외여행</u>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무국외출장</u>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u>공무국외여행</u>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u>공무국외출장</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u>출장하는</u> 경우	3. ----- -- <u>국외출장하는</u> --
<u><신 설></u>	4.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동반하여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u>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u>국외여행</u> 하는 경우	5. ----- ----- <u>국외출장하는</u>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u>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u>공무국외여행</u> 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절차) ----- <u>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u> ----- <u>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u>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 중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① 공무국외출장자-----
의장은 -----

-- 심사위원회-----.

② -----
-----5인 이상으로-----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
-----.

1. 출장----- 출장자-----
2. 방문국과 방문기관-----
3. 출장기간----- 출장경비-----

⑤ ----- 규정에도 -----
----- 제4호까지의 공무 국외출장-----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하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관광성 일정은 배제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여행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4.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생략)
6.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

--.

1. 공무국외출장-----

출장이어야 하고, 국외출장 ----

-----.
2. 출장인원은 출장목적-----

----- 국외출장-----
-----.
3. -----
방문국 -----
출장경위-----
-----.
4. 출장목적 -----

-----.
5. (현행과 같음)
6. -----
----- 출장경비-----

-----.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여행
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국외
출장----- 출장
계획서-----개최하고
의장이 지명한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취지를 설명하며,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최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 출장-----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

제8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 출장을 ----- 공무 국외출장보고서-----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② -----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

<신 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
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
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
출장-----

-----.